

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3차(총인)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

의안 번호	160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3차(총인)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건설중인 중량물재생센터 3차(총인) 처리시설이 2020년 10월 완공 예정으로,
- 나. 동 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으로 강화된 방류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3차(총인) 처리시설 관리대행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- 「하수도법」 제19조의2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 -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○ 필요성

- 3차(총인)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종합시운전(합동근무)과 인수 받아 운영하여야 하나,
- 운영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3차(총인) 처리공정이 기존 운영 중인 공정과는 다른 공법으로 운영관리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대행이 필요함.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3차(총인)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
-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관리대행 시설의 공정효율화 도모
- 관리대행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
- 운영 조건별 운영인자 및 운영자료 정리·보고에 관한 사항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
- 시설규모 : 3차(총인) 처리시설 용량 $Q=412,000\text{m}^3/\text{일}$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1년 5월 ~2023년 4월)

- 종합시운전 기간 중 (6개월 ; '20. 11.~'21. 4.) 2개월은 시운전팀과 총인처리시설 운영요원 합동근무 및 인수인계

※ 서울시 방침 및 제도변경 등으로 중량물재생센터 공단전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변경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(단위 : 천원)

구 분	용역비용	예산과목	세 부 내 역
2021년	940,842	민간위탁금	- 인건비 679,512 (72.2%) - 경비, 이윤, 부가세 261,330
2022년	977,546	민간위탁금	- 인건비 706,678 (72.2%) - 경비, 이윤, 부가세 270,868
2023년	1,015,699	민간위탁금	- 인건비 734,930 (72.3%) - 경비, 이윤, 부가세 280,769

※ 정산비(시험분석비, 약품비, 전력비, 폐기물처리비 등) 별도

- 2021년 소요예산 산출내역 (단위 : 천원)

구 분		2021년 예산	비 고
비 정 산 비	① 인 건 비	679,512	11명
	② 복리후생비	23,532	
	③ 기타 경비	10,309	
	④ 일반관리비	64,202	
	⑤ 이 윤	77,756	
	⑥ 부가가치세	85,531	
	계	940,842	

구 분		2021년 예산	비 고
정 산 비	⑦ 시험분석비	87,795	
	⑧ 약 품 비	2,296,976	
	⑨ 전 력 비	2,104,978	
	⑩ 폐기물처리비	1,859,610	
	⑪ 부가가치세	634,936	
	⑫ 엔지니어링공제보험	13,824	
	계	6,998,119	
합 계		7,938,961	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【하수도법】

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
-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관리대행업자"라 한다)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·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
 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

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】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

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
【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】

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-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·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나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안중필(☎ 2211-2550)